

日帝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下)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변천사(4)—

金 英 宇
(公州大 教育學科)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변천사

1. 開化期의 高等教育 제도
2. 日帝 초기의 高等教育 제도
3. 日帝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上)
4. 日帝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下)
5. 日帝 말기의 高等教育 제도

1

3·1 運動을 계기로 韓國人의 獨立精神과 自主意志를 확인한 당시 民族의 지도자들은 한국에 高等教育機關을 설치하기 위해 私立大學 期成會를 조직하고 전국적으로 자금을 모금하는 등 私立大學 設置運動을 거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같은 한국인들의 私立大學 설립 운동을 저지하는 한편 3·1 운동으로 격화된 한국인의 民心을 수습하기 위해 日帝는 1922년 2월 朝鮮教育令을 새로 제정하면서 本 教育令 속에 근대적인 大學의 설치 근거를 마련, 大學教育과 그 豫備教育은 大學令¹⁾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근거에 따라 조선 총독부는 1924년 5월에 京城帝國大學官制와 京城帝國大學豫科規程

을 제정하여 京城帝國大學을 설치하되, 우선 2년제의 豫科(文科와 理科)를 두어 大學의 예비교육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을 1926년 4월에 學部課程으로 法文學部和 醫學部를 개설하였는 바, 법문학부에는 法律學科, 政治學科, 哲學科, 史學科, 文學科를 두었다가 1927년 4월에 法律學科와 政治學科를 폐지하고 法學科를 설치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은 1934년에 豫科의 수업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935년부터는 大學院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은 豫科와 學部 등 大學의 정규과정의 教育을 실시하는 한편 附屬醫院을 설치하여 간호부와 산파를 양성하고 매년 강습과를 설치하여 하계 강습회를 개설하였으며, 選科生과 청강생 제도를 운영하였다. 즉, 京城帝國大學은 1926년부터 매년 法文學部의 하계 강습회를 개설하여 단기간으로 특수 분야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1927학년도부터는 法文學部의 選科生과 청강생도 모집하여 教育을 실시하였는 바, 특히 1931학년도부터는 高等女學校 졸업자도 選科生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하였다. 1928년

1) 大學令은 1918년 12월 日本勅令 제388호로 제정됨.

6월에 醫學部에 부속 의원을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附屬醫院에서 간호부와 산파를 양성하는 敎育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28년부터 醫學部에 講習科를 설치하여 醫師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강습도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關係規程에 의거하여 경성제대의 制度的 개요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조선 총독부는 1924년 5월 1일자 勅令 제 103호로 京城帝國大學官制를 제정하여 경성제대에 총장과 서기를 두고 豫科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예과에 직원으로 部長, 敎授, 生徒監, 助敎授를 두되, 부장은 豫科의 敎授 중에서 보하고, 교수와 조교수는 生徒의 敎育을 掌하며, 생도감은 豫科의 敎授로 補하되, 生徒의 訓育을 掌하도록 하였다.²⁾

2

조선 총독부는 1924년 5월 2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21호로 京城帝國大學豫科規程을 제정하였는 바, 豫科規程의 주요 내용 개요는 다음과 같다.³⁾

① 豫科의 目的

京城帝國大學 學部에 입학하려는 자에 대하여 고등 보통 敎育을 完成하고, 특히 국민 도덕의 충실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修業年限과 課程

文科와 理科 각 2년

③ 學科課程

- ㄱ. 文科: 修身·국어 및 한문·제1 외국어(英語)·제2 외국어(獨語)·역사·철학개론·심리 및 논리·法制 및 經濟·數學·自然科學·체조
 ㄴ. 理科: 수신·국어 및 한문·제1 외국어(獨語)·제2 외국어(英語)·라틴어·수학·물리·화학·植物 및 動物·心理·도화·체조

④ 學年

4월 1일부터 翌年 3월 31일까지

⑤ 入學資格

- ㄱ. 중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ㄴ. 전문학교 입학 자격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 검정 합격자
 ㄷ. 조선 총독이 中學校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자로 지정한 자

한편, 京城帝國大學에서는 豫科의 文科를 A·B반으로 구분하여 文科 A는 大學에서 法學을 수학하려는 자들을 입학 수용하고, 文科 B는 大學에서 文學을 수학하려는 자들을 수용하였다. 또한 理科는 大學(學部)에서 醫學을 수학하려는 자를 수용하였다. 豫科生은 學科試驗과 體格檢査를 통하여 선발되었는 바, 학과 시험 과목은 文科와 理科가 다르게 하였다. 豫科의 모집 인원은 文科 A 40명, 文科 B 40명, 理科 80명 등 모두 160명으로 하였다.⁴⁾

京城帝國大學은 1928년부터 豫科의 文科 A를 大學 法文學部에 진학하여 法學科를 學修하려는 자로 하고, 文科 B는 大學 法文學部에 진학하여 哲學科, 史學科, 文學科를 學修하려는 자를 선발·수용하는 것으로 하였다.⁵⁾ 또 1934학년도 豫科生 선발시부터는 文科를 大學의 法文學部에 진입하여 法學科, 哲學科, 史學科, 文學科를 學修하려는 자로 하고, 이들을 甲類와 乙類로 나누어 갑류는 英語를 제1 외국어로 하고 獨語를 제2 외국어로 하는 자, 을류는 獨語를 제1 외국어로 하고 英語를 제2 외국어로 하는 자들로 하여 甲類와 乙類 각 40명씩을 모집하였다.⁶⁾

조선 총독부는 1926년 3월 31일자 勅令 제 46호로 京城帝國大學官制를 개정하여 경성제대에 직원으로 總長, 敎授, 助敎授, 事務官, 學生監, 司書官, 助手, 書記, 司書 등을 두되, 교수는 각 부에 分屬하여 學生을 敎수하며 그 연구를 지도하게 하고, 조교수는 교수를 도와 수업과 실험에 종사하게 하며, 학생감은 교수 또는 조교수로 補하여 學生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

2) 「京城帝國大學官制」, 조선 총독부 관보 1924년 5월 2일자 호외.

3) 「京城帝國大學豫科規程」, 조선 총독부 관보 1924년 5월 2일자 호외.

4) 「生徒募集」(京城帝國大學), 조선 총독부 관보 제3421호(1924.1.11).

5) 「生徒募集」(京城帝國大學), 조선 총독부 관보 제295호(1928.2.12).

6) 「生徒募集」(京城帝國大學), 조선 총독부 관보 제2093호(1934.1.4).

도록 하였다. 또 경성제대에 부속 圖書館을 두고 사서관과 사서로 하여금 부속 도서관에서 도서 기록·정리·보존·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⁷⁾

조선 총독부는 1924년 5월 1일자 勅令 제104호로 京城帝國大學에 學部로 法文學部和 醫學部를 두되, 이것은 19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⁸⁾ 또한 조선 총독부는 1926년 4월 1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31호로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에 法律學科, 政治學科, 哲學科, 史學科, 文學科를 두고 1926년 5월 1일부터 수업을 개시하며 京城帝國大學 醫學部도 1926년 5월 1일부터 수업을 개시하도록 하였다.⁹⁾ 이에 따라 경성제대는 1926년 5월 1일 法文學部에 79명, 醫學部에 66명을 입학시켜 學部教育을 시작하였다.¹⁰⁾

경성제대 學部の 開講에 앞서 조선 총독부는 1926년 3월 31일자 勅令 제47호로 경성제대 각 學部 講座的 종류와 그 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¹¹⁾

① 法文學部

헌법·행정법 1, 民法·민사소송법 1, 형법·형사소송법 1, 경제학 1, 政治學·政治史 1, 로마법 1, 哲學·哲學史 1, 지나철학 1, 윤리학 1, 心理學 1, 宗敎學·宗敎史 1, 美學·미술사 1, 教育學 1, 社會學 1, 國史學 1, 朝鮮史學 2, 東洋史學 1, 國語學·國文學 1, 조선어학·조선문학 2, 지나어학·지나문학 1, 外國語學·外國文學 1 강좌

② 醫學部

해부학 3, 生理學 2, 醫化學 1, 藥物學 2, 病理學 2, 미생물학 2 강좌.

3

경성제대는 1926년 4월에 京城帝國大學通則을 제정하였는 바, 全文 3장 57조로 된 本通則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¹²⁾

① 學年

4월 1일부터 翌年 3월 31일

② 入學資格

本學 豫科 수료자 결원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入學을 허가함

ㄱ. 高等學校 또는 學習院의 고등과와 문과 졸업자는 法文學部에, 이과 졸업자는 醫學部에의 입학 지망자

ㄴ. 本學 學部에서 시행하는 學力檢定 시험에 합격한 자

ㄷ. 學士로 他學部나 他學科 입학 지원자나 퇴학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자, 他帝國大學의 學士 자격자 등은 入學을 허가함

③ 卒業者의 칭호

법문학부는 法學士 또는 文學士, 의학부는 醫學士

④ 選科生

學部の 學科에서 한 과목 또는 여타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 學生의 修學에 지장이 없는 한 選科生으로 入學을 허가하되, 입학 자격은 19세 이상의 남자로서 선택 과목을 學修할 만한 학력이 있는 자

⑤ 淸강生

각 學部の 科目을 淸강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는 學部가 정하는 바에 따라 學生의 學修에 지장이 없는 한 淸강生으로 허가하되, 淸강生에게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淸강生은 소정의 淸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⑥ 專攻生

學部 敎官의 지도를 받아 특수 사항을 연구하

7) 「京城帝國大學官制」, 조선 총독부 관보 1926년 4월 1일자 호외.

8) 「京城帝國大學學部」, 조선 총독부 관보 1924년 5월 2일자 호외.

9) 조선 총독부 관보 1926년 4월 1일자 호외.

10) 「京城帝大 新서식 및 入學者」, 조선 총독부 관보 제4137호(1926.6.4).

11) 「京城帝國大學 各 學部에 있어서 講座의 種類 및 其의 數에 關한 件」, 조선 총독부 관보 1926년 4월 1일자 호외.

12) 「京城帝國大學通則」, 조선 총독부 관보 제4100호(1926.4.22).

러는 자가 있는 때는 전공생으로 입학을 허가하
되, 전공생은 入學金과 學部 소정의 研究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大學院

學士 자격자로 大學院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는 學部 教授會議를 거쳐 入學을 허가하며, 학
력을 검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재학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이며, 大學院生은 소
정의 研究料를 납부하고, 매년말에 연구 성적을
지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大學院 학생 중 학
력이 우수하고 지조 견실한 자를 特選給費生으
로 하여 研究料를 면제하고 학자를 급여한다.

경성제대는 1926년 4월에 京城帝國大學 法文
學部規程을 제정하였는 바, 本 規程의 내용 개
요는 다음과 같다.¹³⁾

① 學部 수업 과목

헌법·행정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
소송법·상법·국제공법·국제사법·정치학·정
치학사·정치사·外交史·재정학·경제학·로마
법·法理學·법제사·통계학·哲學·哲學史·윤
리학·心理學·宗敎學·宗敎史·美學·미술사·
敎育學·敎育史·지나철학·사회학·國史學·조
선사학·동양사학·서양사학·국어학·국문학·
조선어학·조선문학·지나어학·지나문학·영어
학·영문학·언어학·독일어학·불란서학

② 修學期間

최단 3년

③ 學科

法律學科, 政治學科, 哲學科, 史學科, 文學科

④ 學科別 전공·필수·선택 과목과 이수 단위

ㄱ. 法律學科

가. 필수

헌법(1), 民法(5), 상법(2), 민사소송법(2),
형법(1), 형사소송법(1), 로마법(1), 外國語學
(1)

나. 선택

행정법(2), 法理學(1), 국제공법(2), 국제사
법(1), 法制史(2), 경제학(3), 哲學科·史學科·
文學科에 속하는 과목(2)

ㄴ. 政治學科

가. 필수

헌법(1), 민법(5), 경제학(3), 국제공법(2),
정치사(1), 행정법(2), 재정학(2), 外交史(1),
정치학(1), 外國語學(1)

나. 선택

형법(1), 국제사법(1), 통계학(1), 상법(2),
정치학사(1), 법제사(2), 法理學(1), 哲學科·
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2)

ㄷ. 哲學科

가. 전공

哲學·哲學史(7), 倫理學(7), 心理學(7), 宗
敎學·宗敎史(7), 美學·美學史(7), 敎育學·敎
育史(7), 지나철학(7)

나. 필수

전공 과목에 속하는 과목 7단위와 外國語 2 단
위

다. 선택

전공 과목 이외의 哲學科에 속하는 과목 8 단
위 이상, 學部가 과하는 과목 중 4단위 이상

ㄷ. 史學科

가. 전공

國史學(7), 朝鮮史學(7), 東洋史學(7)

나. 필수

전공 과목에 속하는 과목 7단위와 外國語 2
단위

다. 선택

전공 과목 이외의 史學科에 속하는 과목 6 단
위 이상과 學部가 과하는 과목 중 6단위 이상

ㄷ. 文學科

가. 전공

國語學·國文學(7), 조선어학·조선문학(7),
지나어학·지나문학(7), 영어학·영문학(10)

나. 필수

전공에 속하는 과목 7단위와 外國語 2단위

다. 선택

전공 과목 이외의 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6 단
위 이상과 學部가 과하는 과목 중 6단위

⑤ 시험 성적

우, 량, 가, 不可로 하되 '가' 이상을 합격으
로 함

13)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規程」, 조선 총독부 관보 제4101호(1926.4.23).

⑥ 在學期間

6년을 넘을 수 없다.

경성제대는 1926년 4월에 京城帝國大學 醫學部規程도 제정하였는 바, 本 規程에 명시된 醫學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¹⁴⁾

① 學期

學年을 3 학기로 분함

② 學科目

해부학(계통해부학·조직학·해부학 실습·조직학 실습·현미경사용법·胎生學), 生理學(生理學·실습), 醫化學(醫化學·실습), 미생물학(미생물학·기생충학·면역학), 藥物學, 病理學(병리총론·병리각론·임상병리학), 위생학 및 예방의학, 法醫學, 內科學, 外科學, 產科學婦人科學,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眼科學, 이비인후과학, 소아과학, 理學的 療法科學, 神經精神科學, 치과학, 科外講義(의학사·醫事法制·社會醫學·비교해부학·人類學·유전학·醫心理學·특별강의)

③ 試驗의 종류

學期 시험과 학년 試驗

④ 在學期間

8년을 넘지 못함

⑤ 專攻生

의사 면허장을 가진 자, 外國 의과대학에서學位를 취득한 자, 他學部 소정의 學士 자격을 가진 자를 교수 회의를 통해 專攻生으로 入學을 허가하되, 전공생의 在學期間은 1년으로 함

⑥ 청강과

청강과를 두어 의사들에게 醫學을 보습하게 하되, 강습생은 강습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성제대는 1926년 4월에 事務分掌規程을 제정하여 京城帝國大學에 庶務課와 會計課를 두어 大學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¹⁵⁾

경성제대는 1927년 4월에 法文學部規程을 개정하여 本 學部에서 과하는 과목과 學科別 과목을 바꾸고 外國語 學修課程, 卒業者의 칭호, 在學期間, 청강생과 전공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¹⁶⁾

① 法文學部에서 課하는 과목

法文學部가 과하는 과목 중 東洋史學과 西洋史學을 빼고 經濟政策, 史學개론, 考古學, 문학개론, 英語, 회랍어, 라틴어, 조선어, 東洋語 등의 과목을 추가하였다.

② 設置學科 중 法律學科와 政治學科를 없애고, 法學科를 추가하여 法學科, 哲學科, 史學科, 文學科로 하였다.

③ 學科別 과목과 단위

ㄱ. 法學科

헌법(1), 행정법(2), 민법(4), 민사소송법(3), 형법(2), 형사소송법(1), 법제사(2), 상법(2), 국제공법(2), 국제사법(1), 정치학(1), 정치학사(1), 정치사(1), 외교사(1), 재정학(1), 경제학(1), 경제정책(1), 로마법(1), 法理學(1), 통계학(1), 法醫學(1)

ㄴ. 專攻別 과목과 單位

가. 哲學·哲學史 전공자

철학개론(1), 西洋哲學史개론(2), 논리학인식론(1), 哲學演習(3), 철학특수강의(2), 哲學科에 관한 과목과 회랍어와 라틴어 중 8단위, 史學科·文學科·法學科에 속하는 과목 중 2단위

나. 倫理學 전공자

윤리학개론(1), 윤리학사(2), 윤리학특수강의(2), 윤리학강독 및 연습(2), 哲學科나 法學科의 학과목 중에서 11단위

다. 心理學 전공자

심리학개론(1), 심리학연습(4), 심리학실험실습(1), 심리학특수강의(2), 哲學科의 학과목 중에서 6단위, 生理學·정신병학·生物學 중에서 2단위, 史學科·文學科·法學科의 과목 중에서 2단위

라. 敎育學 전공자

교육학개론(1), 교육사개설(1), 각과교수론(1), 교육행정(1), 교육학연습(2), 교육학특수강의(1), 哲學科의 과목과 生理學·정신병학·生物學 중에서 10단위, 史學科·文學科·法學

14) 「京城帝國大學 醫學部規程」, 조선 총독부 관보 제4102호(1926.4.24).

15) 「京城帝國大學 事務分掌規程」, 조선 총독부 관보 제4102호(1926.4.24).

16)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規程」, 조선 총독부 관보 제76호(1927.4.4).

과의 과목 중 2 단위

마. 지나철학 전공자

지나철학사개론(1), 지나윤리학개론(1), 지나철학 및 철학사 특수강의(3), 지나철학·지나윤리학 강독 및 연습(3), 지나어(1), 哲學科·史學科·法學科의 과목 중 10 단위

바. 國史學 전공자

國史學개론·국사학특수강의·國史學연습 8단위, 史學科의 과목 중 6 단위, 哲學科·文學科·法學科의 과목 중 5 단위

사. 朝鮮史學 전공자

조선사학개론·조선사학특수강의·조선사학연습 8단위, 史學科의 과목 중 8 단위, 조선어 또는 朝鮮文學 중 1 단위, 哲學科·文學科·法學科의 과목 중 2 단위

아. 東洋史學 전공자

동양사학개론·동양사학특수강의·동양사학연습 8단위, 史學科의 과목 중 8 단위, 哲學科·文學科·法學科의 과목 중 3 단위

자. 國語學·國文學 전공자

국어학개론·국어학특수강의·국어학연습·國文學개론·國文學특수강의·國文學연습 9 단위, 哲學科·文學科·法學科의 과목 중 9 단위

차. 朝鮮語學·朝鮮文學 전공자

조선어학개론·조선어학사·조선어학강독·조선사상 및 신앙사개설·조선유학사·조선문학강독 8 단위, 哲學科·文學科·法學科의 과목 및 東洋語(지나어·만주어·몽고어) 중 10 단위

카. 지나어·지나文學 전공자

지나문학개론(1), 지나문학사(2), 지나문학강독 및 연습(5), 지나어(2), 哲學科·史學科·文學科·法學科의 과목 중 10 단위

다. 英語學·英文學 전공자

영어학(영어발달사·文法·음성학), 영문학개론·영문학사·영문학강독 및 연습 9 단위, 哲學科·文學科·法學科의 과목 중 7 단위, 회랍어 및 라틴어 중 1 단위

④ 外國語 學修課程

가. 外國語의 종류

영어·독어·불어

나. 영어학·영문학 전공 학생은 독일어와 불어 중 하나, 他學生은 영어·독일어·불어 중 하나를 선정할 수 있음

⑤ 卒業者의 칭호 學士

⑥ 在學期間

學生의 재학 기간은 6년을 넘지 못함

⑦ 청강생 및 전공생

청강생과 전공생은 教授會議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되, 청강생은 청강료, 전공생은 연구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4

조선 총독부는 1927년 6월 1일자 勅令 제154호로 경성제대 각 學部의 강좌 종류와 그 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¹⁷⁾

① 法文學部

헌법·행정법 1 강좌를 2 강좌로, 형법·형사소송법 1 강좌를 형법·형사소송법 2 강좌와 국제공법 1 강좌로, 民法·민사소송법 1 강좌를 民法·민사소송법 3 강좌와 상법 1 강좌로, 정치학·정치사 1 강좌를 2 강좌로, 哲學·哲學史 1 강좌를 2 강좌로, 倫理學 1 강좌를 2 강좌로, 心理學 1 강좌를 2 강좌로, 美學·미술사 1 강좌를 2 강좌로, 東洋史學 1 강좌를 동양사 2 강좌와 서양사 1 강좌로, 國語學·國文學 1 강좌를 2 강좌로, 外國語學·外國文學 1 강좌를 2 강좌로 함

② 醫學部

위생학·예방의학 1 강좌, 內科學 1 강좌, 外科學 1 강좌를 추가함

경성제대는 1928년 1월 17일자 學則 제1호로 大學通則과 學部規程을 개정하였는 바¹⁸⁾, 대학 통칙에서는 選科生 지망자의 선택 과목과 입학료와 수험료에 관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學部規程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法文學部規程을 개정하여 哲學科의 전공 분야별 學修 과목과 단위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

17) 조선 총독부 관보 제130호(1927.6.7).

18) 동 계342호(1928.2.22).

였다.

① 宗敎學·宗敎史 전공자 學修科目

종교학개론(1), 종교사개론(1), 宗敎哲學(1), 宗敎學·宗敎史특수강의(4), 宗敎史學·宗敎史강독 및 연습(3), 哲學科·史學科·法學科의 과목 중 8단위

② 美學·美術史 전공자 學修科目

미학개론(1), 미학연습(2), 미학특수강의(1), 서양미술사(2), 동양미술사(2), 哲學科·史學科·文學科·法學科의 과목 중 10단위

醫學部規程의 학과목 중 神經精神科學을 神經科學·精神科學(신경과학, 정신과학, 신경과·정신과 임상강의, 외래환자 임상강의)으로 개정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28년 4월 17일자 勅令 제58호로 경성제대의 각 學部에 두는 강좌의 종류와 그 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¹⁹⁾

① 法文學部

헌법·행정법 2, 민법·민사소송법 4, 상법 2, 형법·형사소송법 2, 국제공법 1, 국제사법 1, 經濟學 2, 정치학·정치사 2, 외교사 1, 재정학 1, 로마법 1, 法理學 1, 法制史 1, 통계학 1, 哲學·哲學史 2, 지나철학 1, 倫理學 2, 心理學 2, 宗敎學·宗敎史 1, 미학·미술사 2, 敎育學 2, 社會學 1, 國史學 2, 朝鮮史學 2, 東洋史學 2, 西洋史學 1, 國語學·國文學 2, 조선어학·조선문학 2, 지나어학·지나문학 1, 外國文學·外國語學 2 강좌 등이다.

② 醫學部

內科學 1 강좌를 3 강좌로, 外科學 1 강좌를 의학 2 강좌와 정형외과학 1 강좌로, 또 산과학·부인과학 1, 피부과학·비뇨기과학 1, 안과학 1, 이비인후과학 1, 소아과학 1, 신경과학·정신과학 1 강좌 등으로 개정하였다.

경성제대는 1928년 8월에 醫學部規程을 개정하여 醫學部의 학과목에 整形外科學(정형외과 임상강의·외래환자 임상강의)을 추가하였다.²⁰⁾

조선 총독부는 1928년 5월 28일자 勅令 제96호로 京城帝國大學官制를 개정하여 경성제대 의학부에 附屬醫院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속 의원에 직원으로 醫院長, 藥局長, 藥劑官, 藥劑手, 看護長 등을 두도록 하였다.²¹⁾

이같은 규정에 따라 조선 총독부는 1938년 6월 1일 朝鮮總督府醫院을 경성제대 의학부의 附屬醫院으로 이관하였다. 한편, 부속 의원에서는 1928년 10월부터 看護婦科와 產婆科를 설치하고 學生을 모집하여 간호부와 산과를 양성하는 교육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경성제대는 1929년 7월 1일에 學部規程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²²⁾

① 法文學部의 강좌와 그 수에 있어 社會法 1, 經濟學史 1, 經濟史 1, 社會政策 1, 금융론 1 강좌 등을 추가하였다.

② 醫學部規程을 개정하여 本學部의 시험으로 醫學士의 칭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목의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였다. 즉, 해부학(조직학·태생학 포함), 生理學·醫化學·미생물학·기생충학·病理學·약물학·위생학·예방의학·法醫學·임상약물학·內科學·정형외과학·외과학·산과학·부인과학·안과학·소아과학·이비인후과학·피부과학·비뇨기과학·정신과학·신경과학·임상병리학 등이다

조선 총독부는 1934년 3월 31일자 조선 총독부령 제35호로 京城帝國大學 豫科規程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²³⁾

① 修學年限

3년

② 敎科目

Ⅰ. 文科

修身·國語 및 漢文, 제1 외국어·제2 외국어·歷史·地理·哲學개설·심리 및 논리·法制 및 經濟·數學·自然科學·體操

Ⅱ. 理科

修身·國語 및 漢文·제1 외국어·제2 외국어

19) 동 제392호(1928.4.23).

20) 동 제480호(1928.8.3).

21) 동 제426호(1928.6.1).

22) 「學部規程中改正」, 조선 총독부 관보 제784호(1929.8.12).

23) 「京城帝國大學 豫科規程中改正」, 조선 총독부 관보 제2165호(1934.3.31).

어·라틴어·數學·物理·化學·植物 및 動物·
心理·歷史·法制 및 經濟·體操

③ 入學資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ㄱ. 中學校 또는 高等普通學校 4학년을 수료
한 자

ㄴ. 조선 총독이 大學 豫科 입학에 관해 中學校
4학년 수료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지정한 자

ㄷ. 高等學校 심상과를 수료한 자

ㄹ. 大學 豫科 또는 高等學校 高等科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ㅁ. 專門學校 입학자 檢定規程에 의한 시험
검정에 합격한 자

ㅂ. 조선 총독에 의해 一般專門學校의 입학에
관해 中學校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지정받은 자

경성제대는 1935년 1월에 法文學部規程을 전
면적으로 개정하였는 바, 개정된 法文學部規程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⁴⁾

① 學科

法學科, 哲學科, 史學科, 文學科

② 修學期間

최단 3년으로 하되, 在學 6년이 되도록 學士 칭
호를 얻지 못하면 학적을 상실함

③ 學期

2學期制(1학기 : 4.1~10.15, 2학기 : 10.16
~3.31)

④ 法學科의 學科목과 이수 단위

헌법 1, 행정법 2, 민법 5(총칙·物權法·채권
법·친족법·상속법), 상법 4(총칙·상행위법·
회사법·수형법·소절수법·보험법·해상법),
민사소송법 2(총칙·판결수속·집행·집행보전
수속), 파산법 1, 刑法 2, 형사소송법 1, 社會
法 1, 국제공법 2(평시법·전시법), 국제사법
1, 東洋法制史 1, 西洋法制史 1, 로마법 2(私
法·公法), 法醫學 1, 政治學 1, 정치학사 1,
정치사 1, 外交史 1, 재정학 1, 經濟原論 1, 經
濟學史 1, 經濟史 1, 화폐금융론 2(화폐론·금
융론), 경제정책 2(농업정책·상공정책), 사회

정책 1, 統計學 1

⑤ 哲學科·史學科·文學科의 學生이 學修할
과목을 나누어 공통 과목, 전공 과목, 외국어로
한다.

⑥ 學科別 學修科目

ㄱ. 哲學科

가. 공통

哲學보통강의(철학개론·서양철학사개론), 倫
理學보통강의(윤리학개론·서양윤리학사개론·
日本도덕사), 心理學보통강의(심리학개론·심리
학사), 宗教學보통강의(종교학개론·불교개론·
종교사개론), 美學·美術史보통강의(미학개론·
미술사), 敎育學보통강의(교육학개론·교육사개
설·각과교수론), 지나철학보통강의(지나철학개
설·지나윤리학개론), 社會學보통강의(사회학개
론·사회학사개설), 史學개론, 文學개론 각 1
단위

나. 전공 과목 이수 단위

· 哲學專攻 : 철학보통강의 2, 논리학인식론 1,
哲學특수강의 및 연습 5, 희랍어·라틴어 1, 哲
學科·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4

· 倫理學專攻 : 윤리학보통강의 2, 윤리학특수
강의 및 연습 5, 지나윤리학개론 1, 불교개론
1, 사회학 1, 哲學科·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3

· 心理學專攻 : 심리학보통강의 1, 심리학특수
강의 및 연습 6, 심리학실험실습 1, 生理學 1,
정신병학 1, 哲學科·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3

· 宗教學專攻 : 종교학보통강의 2, 종교학특수
강의 및 연습 5, 哲學科·史學科·文學科에 속
하는 과목 6

· 美學·美術史專攻 : 미학·미술사보통강의
3, 同 특수강의 및 연습 4, 考古學 1, 哲學科·
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5

· 敎育學專攻 : 교육학보통강의 2, 同 특수강
의 및 연습 4, 교육행정 1, 哲學보통강의 2, 심
리학실험연습 1, 生理學·정신병학 1, 哲學科·
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2

· 지나哲學專攻 : 지나철학보통강의 1, 同 특

24) 조선 총독부 관보 제2413호(1935.1.30).

수강의 및 연습 6, 지나어 1, 東洋史보통강의 1, 國語學·國文學·조선문학 2, 지나문학 2

ㄴ. 史學科

가. 공통

史學개론 1, 國史보통강의(개설) 1, 조선사학보통강의(개설) 1, 東洋史學보통강의 1, 서양사학보통강의 2, 考古學 1, 地理學 1, 교육학보통강의 2

나. 전공

· 國史學專攻: 국사학보통강의(時代史) 2, 同 특수강의 및 연습 4, 조선사학 1, 동양사학 1, 서양사학 1, 미술사(日本) 1, 國語學·國文學보통강의 1, 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1

· 朝鮮史學專攻: 조선사학보통강의(시대사) 2, 同 특수강의 및 연습 4, 國史學·東洋史學 각 1 단위 이상 합하여 3, 西洋史學 1, 조선어학·조선문학보통강의 1, 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1

· 東洋史學專攻: 동양사학보통강의 1, 同 특수강의 및 연습 4, 國史學 1, 조선사학 1, 서양사학 1, 미술사(동양) 1, 지나철학·지나문학보통강의 1, 지나어·동양어 1

ㄷ. 文學科

가. 공통

문학개론 1, 언어학개론 1, 哲學보통강의·心理學보통강의와 미술·미술사보통강의 1, 敎育學보통강의 2

나. 전공

· 國語·國文學專攻: 國語學·國文學보통강의 3, 同 특수강의 및 연습 6, 지나어학·지나문학 3, 조선어학·조선문학 1, 지나철학보통강의 1, 國史學보통강의 1, 哲學科·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2

· 朝鮮語·朝鮮文學專攻: 조선어학·조선문학보통강의 2, 同 특수강의 및 연습 5, 지나어·지나문학 3, 국어학·국문학 3, 지나철학보통강의 1, 조선사·동양사보통강의 2, 哲學科·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1

· 지나語·지나文學專攻: 지나어학·지나문학보통강의 2, 同 특수강의 및 연습 5, 지나어 2, 국어학·국문학 3, 조선어학·조선문학 1, 지나철학 2, 동양사학 1, 哲學科·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1

· 英語·英文學專攻: 영어학·영문학보통강의 3, 同 특수강의 및 연습 7, 영어 1, 회람어·라틴어 1, 國語學·國文學 1, 哲學科·史學科·文學科에 속하는 과목 4

⑦ 外國語는 영어·독어·불어로 함

⑧ 卒業論文

學生은 3학년 2학기 이후 전공에 따라 卒業論文을 제출해야 하며, 졸업 논문에 관해 구두 시험을 행한다.

⑨ 選科生

ㄱ. 入學試驗 응시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中學校, 高等女學校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 학교 졸업자

나. 專門學校 입학자 檢定試驗 합격자

다. 入學 후의 전공 과목에 대한 師範學校·中學校·高等女學校 면허장 소유자

ㄴ. 學力檢定 시험 과목

國語, 漢文, 作文, 外國語(영어·독어·불어 중 1), 國史, 東洋史, 철학개설·法制經濟 중 1 과목

⑩ 청강생과 專攻生

ㄱ. 청강생 學力檢定

청강생 지원자에게 國語, 漢文, 外國語(영어·독어·불어 중 1)에 대해 학력을 검정하여 이를 허가함

ㄴ. 專攻生의 入學

전공생 입학 지원자에 대해 전공 과목의 학력을 검정하고 교수 회의를 거쳐 이를 허가함.

5

경성제대는 豫科와 學部를 두어 敎育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法文學部에 選科生制度和 청강생 제도를 두어 양 제도의 學生을 모집·敎育하고, 매년 하계 강습회를 法文學部에서 개최하도록 하였다. 한편, 醫學部에 講習科를 두어 醫師를 대상으로 한 단기 강습도 실시하게 하고, 附屬醫院에 간호부와 산과과를 두어 간호부와 산과를 양성하는 敎育도 실시하였다.

경성제대 法文學部에서는 1926년부터 매년 여

름마다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강습회를 개설하였다.

① 강습 기간

4일 내지 12일간

② 강습 과목

매년 다른 과목으로 강습을 실시하였는 바, 1926년도에 실시한 과목은 漢文學의 形式 및 內容, 佛敎의 根本思想, 朝鮮古代史개론, 조선의 고적과 유물 등이었고²⁵⁾, 1927년 7월에 실시한 강습 과목은 人文學의 발달, 日本文學의 特色, 代議制度和 선거, 기후의 변동과 환경학설 등이었다.²⁶⁾

③ 수강자 수

일정하지 않았으나, 1926년에 약 200명, 1927년에 약 180명을 각각 모집하였다.

④ 청강자의 자격

자격은 제한하지 않았으나, 1929년 7월에 실시한 하계 강습회는 강습원의 자격을 中等學校敎員을 위주로 하였다.²⁷⁾

⑤ 講習時間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⑥ 청강료의 납부

경성제대 法文學部에서는 1927년부터 매년 선과생과 청강생을 모집하여 소정의 敎育을 실시하였는 바, 선과생과 청강생 모집 요령은 다음과 같다.

경성제대 법문학부는 1927년 4월 哲學科·史學科·文學科에 입학할 선과생과 청강생 약간 명을 다음의 요령으로 모집하였다.²⁸⁾

① 選科生

ㄱ. 지원 자격

19세 이상의 男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中學校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교 졸업자

나. 專門學校 입학자 試驗檢定에 합격한 자
다. 專攻할 과목의 師範學校·中學校·高等女學校 敎員 면허장을 가진 자

ㄴ. 入學試驗 과목

國語 및 漢文, 作文, 外國語(英·獨·佛語 중 1)

② 청강생

ㄱ. 지원 자격

19세 이상의 男子

ㄴ. 入學試驗 과목

國語 및 漢文, 英語

경성제대 法文學部는 1929년 4월과 1930년 4월에 입학할 選科生과 청강생을 모집하면서 選科生의 모집 학과는 哲學科·史學科·文學科로 한다. 특히 청강생의 경우 입학할 學科를 法學科·哲學科·史學科·文學科로 하고, 입학 지원 자격을 19세 이상의 남자로 하였으며, 입시 과목은 國語, 漢文, 英語로 하며 출제 수준은 中學校 졸업 정도로 하였다.²⁹⁾

法文學部는 1931년도 選科生의 모집부터 선과생의 입학 지원 자격에 高等女學校 졸업자를 추가하여³⁰⁾ 高等女學校를 졸업한 女子에게도 法文學部의 哲學科·史學科·文學科에 選科生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는 1936년 4월에 청강생만을 모집하면서 입학 지원 자격을 19세 이상의 男女로 함으로써 청강생으로 女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³¹⁾

醫學部는 1928년부터 講習科를 설치하고 강습생을 모집하여 醫師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再敎育을 실시하였다. 1928년 2월에 실시한 제1회 京城帝國大學 醫學部講習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²⁾

25)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夏季講習會要項」, 조선 총독부 관보 제4149호(1926.6.19).

26) 「夏季講習會청강생모집」, 조선 총독부 관보 제129호(1927.6.6).

27) 조선 총독부 관보 제733호(1929.6.13).

28) 「선과생 및 청강생모집」(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조선 총독부 관보 제38호(1927.2.17).

29) 「선과생 및 청강생 모집 요항」, 조선 총독부 관보 제631호(1929.2.9), 동 제925호(1930.2.4).

30) 「선과생 및 청강생 모집」(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 총독부 관보 제1184호(1930.12.12).

31) 「청강생 모집」(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 총독부 관보 제2673호(1935.12.10).

32) 「第1回 京城帝國大學 講習科講習生募集要項」, 조선 총독부 관보 제287호(1927.12.13).

① 期間

1928년 2월 15일부터 10일간

② 강습회장

朝鮮總督府醫院

③ 受講資格

醫師

④ 講習科目

結核

⑤ 定員

30명

경성제대 醫學部の 附屬醫院에서는 1928년부
터 간호부와 산과과를 설치하고 매년 1~2 회
학생을 모집하여 간호부와 산과과를 양성하는 敎
育을 실시하였는 바, 學生募集 요강은 다음과
같다.³³⁾

① 入學資格

각 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신체 건전하고
品行方正하며 지조 견실하고 高等小學校나 普通
學校 高等科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ㄱ. 간호부과는 16 세 이상 25 세 이하의 배우
자가 없고 가사의 係累가 없는 자

ㄴ. 산과과는 18 세 이상 35 세 이하로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자

② 入學試驗 科目

國語, 산술

③ 募集人員

ㄱ. 간호부과

給費生으로 15~30 명

ㄴ. 산과과

자비생으로 本科 10 명, 特科 15 명 등이다. *

33) 「生徒募集」(京城帝國大學 醫學部附屬醫院), 조선 총독부 관보 제503호(1928.8.20), 동 제631호(1929.2.9), 동 제939호(1930.2.21), 동 제1390호(1931.8.22), 동 제1533호(1932.2.19), 동 제1991호(1933.8.28), 동 제2407호(1935.1.23).